국내외 마이데이터 관련 법현황 및 시사점

2019. 11. 29.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 **구태언 변호사**

마이데이터의 의의

'마이데이터(MyData)'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 '마이데이터 산업'
 -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 정보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 의료, 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논의가 활발

마이데이터 추진의 배경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u>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u>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u>빅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에만</u>
 <u>도움이 되고, 정보주체인 개인은 소외될 우려가 발생</u>
-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새로 도입된 정보주권인 'Right to Data Portability'를 신용정보법 체계에 맞추어 국내에 수용하여 '개인신용정보이동권' 도입

외국의 개인금융정보 관련 제도

- 'EU에서는 PSD2(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 Payment Services Directive 2)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ccount Information Service)를
 도입
- 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Technology-driven disruption")으로 대형사 중심의 유럽 은행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
 - "An earthquake in European banking New payments regulation has the potential to shake up the banks" The Economist, '17.2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체계 : 일반법과 특별법이 공존

- 정보통신망법'(1999년), '신용정보법'(1995년)등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시행
 - ->특별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비 미비로 인하여 중복규제 문제 발생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한다.(2018.12.13 시행)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허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법령만 1500개(2015.말 기준)
- CPO는 모든 법령이 업무 범위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39조③,④) 분실,도난,유출, <u>위조.변조,훼손</u> <u>고의 또는 중대한과실</u> 손해액 3배까지	(제32조 제2항) 분실,도난,유출, <u>위조,변조,훼손</u> <u>고의 또는 중대한과실</u> 손해액 3배까지	(제43조②③) 누설,분실,도난, 누출,변조,훼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손해액 3배까지
법정 손해배상	(제39조의2) 분실,도난,유출, <u>위조.변조,훼손</u> <u>고의 또는 과실(추정)</u> 300만원 범위 내	(제32조의2) 개인정보규정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 시행 2017. 2) <u>고의 또는 과실(추정)</u> 300만원 범위 내	(제43조의 2) 누설,분실,도난, 누출,변조,훼손 <u>고의 또는 과실(추정)</u> 300만원 범위 내
손해배상 보장		(제 32조의3)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혹은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시행 2019.13)	(제43조의 3)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흑은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과징금	<u>5억원 이하</u> (주민등록번호 한정)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u>100분의 3</u>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u>100분의 3</u>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국내 정보보호 법제도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 누설하거나 이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59조 제2호, 제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 제75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50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 제59조 제1호, 제60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2조, 제49조의 제1항, 제66조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 으로 사용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6항,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3조, 제28조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최근에야 주목 받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 '개인정보'

- 관계부처 합동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
- 개인정보 개념정의에 대한 합리적 제한 시도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u>'처리하는 자 '의 입장</u>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구체적 비식별화조치방안제시 및 한계
-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 반증이 있을 경우 다시 개인정보로 될 여지가 있음.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최근에야 주목 받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 '개인정보'

- 관계부처 합동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단계

●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출처 : 시사저널e>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비교
-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o 2018.2.4, 4차 산업혁명위 주관 '해커톤' 회의 합의 결과
 - o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 반영
-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u>'가명정보' 개념을 도입</u>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
 -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 2. "개인신용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2조 1의2. "가명처리"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익명정보의 개념은 정의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 15<u>. "가명조치"란 추가정보를</u>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7. "익명조치"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안들 간의 주요 차이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의 정의 간에 차이
 -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나,
 -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가명조치'를 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익명처리'의 정의가 없으나(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반사적으로 규정된다는 뜻으로 보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있음
- 비식별처리(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은 늘어났으나, 불명확한 규제로 인하여 활용 가능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가명정보성을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 '다른 정보'와 '추가정보'의 의미의 차이 등

- 현재까지의 경과
- 시민단체, 개정안 모두 반대
 - "개인정보보호미흡, 유출사고시 책임소재도 불명확"
- 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 경제 경쟁에 참여하려면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
- 김병욱 의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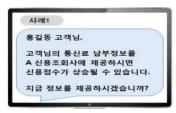
- 향후 전망
-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를 통한 활용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이 형성됨
- 이러한 입법개정안들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에 진입하는 발판이 될 것임
- 요구되는 비식별조치의 정도(익명정보, 가명정보 등)와 그 활용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바 당분간 논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음
 - -> <u>'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도</u>하는 동시에 <u>개인정보 활용에</u> <u>따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u>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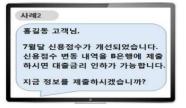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①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 ❸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
 - 필요시, 신용조회사(CB사) · 금융회사 등에 **궁정적 정보 제출,** 부정적 정보 삭제 · 정정 요청 등 본인정보 관리업무도 수행





② (재무현황 분석)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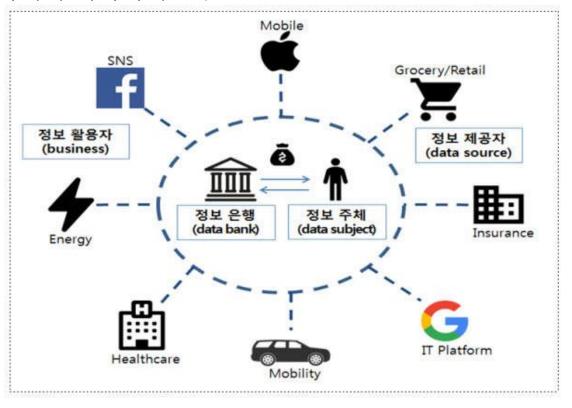




④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 재무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시대의 데이터의 흐름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신용정보법 상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

-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되 신용관리, 자산관리, 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겸영, 부수업무를 허용
 - 1. 고유업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 2. 부수업무: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 3. 검영업무: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고유업무' :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
- 1.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u>금융회사 등으로부터</u>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본인의 자산, 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망라
- 3.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 (i)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ii)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 내역, (iii)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금 계좌정보, (iv)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 (단, 보험금 지급정보는 제외), (v)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 투자상품 (주식.펀드.ELS 등)의 종류별 총액 정보, (vi)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부수업무': 정보관리 및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 1. 정보계좌 업무: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외에도) <u>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u>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계좌정보 업무 허용
-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정보관리") 업무
- 3.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겸영업무':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 1.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문, 일임업 로보어드바이저 등
-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상의 금융상품자문업

마이데이터에 핀테크 웃고, 은행들 부들부들...

▲ 매경프리미엄 > 스페셜리포트

마이데이터에 핀테크 '웃고' 은행들 '부들부들'…이유는?

김진솔 입력: 2019.06.10 06:01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마이데이터에 핀테크 웃고, 은행들 부들부들...

(매경프리미엄 기사,이어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협조적인 금융회사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전송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u>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해</u>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u>'을 갖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을 일부 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부 지원금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데이터 개방을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면, 법 개정 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야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의 갑을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핀테크업계는 찬성하고 기존 금융권은 반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자의 사견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던 핀테크회사의 입지가 강해지는 것은 맞지만, 금융회사와의 갑을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다소 거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금융환경에서 아직 스타트업 규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핀테크회사가 거대 금융회사의 '갑'이 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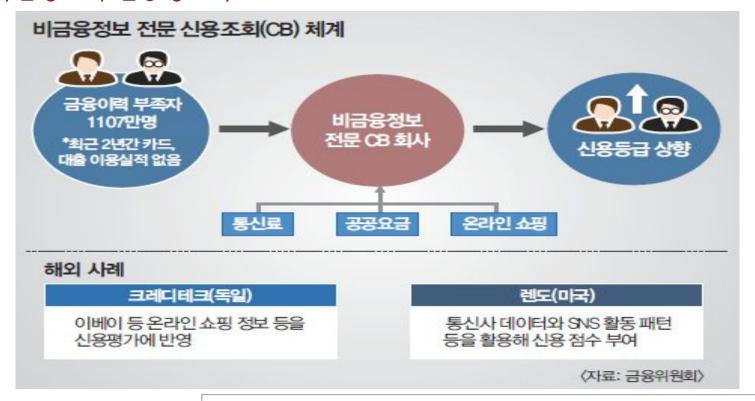


모든 개인정보의 신용정보화

- '모든 개인정보'의 '신용정보' 化
 - 공공요금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도입 예정
 - 2018.11.15.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포함된 내용
 - 금융위원회 2018.8.21. <데이터 결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

"모든 개인정보 = 신용정보"

모든 개인정보의 신용정보화



<"주부, 사회초년생 등 1107만명 신용평점 개선된다", 2018.11.21, 구미일보 >

모든 개인정보의 신용정보화

대규모 시범사업: '18년 금융 등 2개 〉 '22년 에너지 등 5개







의료정보, 통신서비스관련 정보 등도 모두 마이데이터로 통합관리

모든 개인정보의 신용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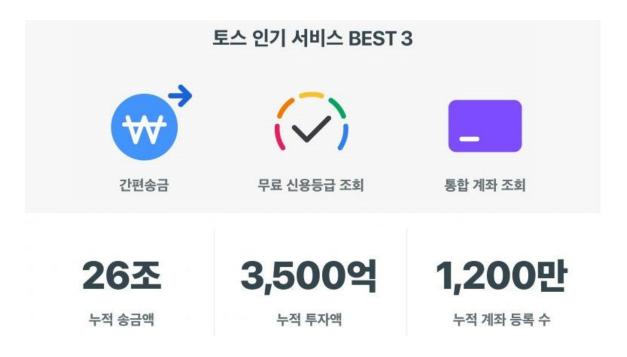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 펀드 신용평가 모형>

"정부의 당부말씀"

- 핀테크 기업인 신용정보관리업자의 육성정책이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작용
- 1.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기존의 금융회사는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 협조
- 2. 핀테크 사업자들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금융소비자보호 산업'으로서의 책임이 증대 금융당국의 상시적 감독 영역으로 진입
 - => 관리감독의 강화 RISK 증가
- 4.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 정보보호,보안 기술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현장의 의견수렴 필요
 - =>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제도 정비 등 필요. 정보유출, 해킹사고 발생 RISK 증가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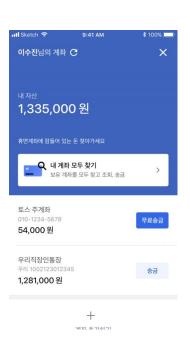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



60% 20대 전체 인구 중 약 60%가 토스 가입자 (402만 명)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최근 급성장중인 뱅크샐러드

300만이 선택한 내 돈 관리 행크샐러드^{*}

내게 맞는 금융상품, 비교하기 힘드시죠?

뱅크샐러드는 쉽고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국내 최대 금융상품 데이터

4200여개의 금융상품과 복잡한 금융 상품의 각종 조건들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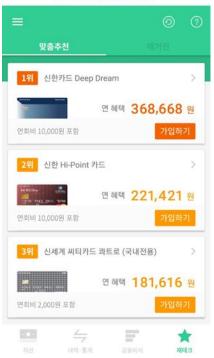
수백만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나를 위한 맞춤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광고, 홍보 X

뱅크샐러드의 추천에는 광고도, 홍보도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합니다.

O banksalad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최근 급성장중인 뱅크샐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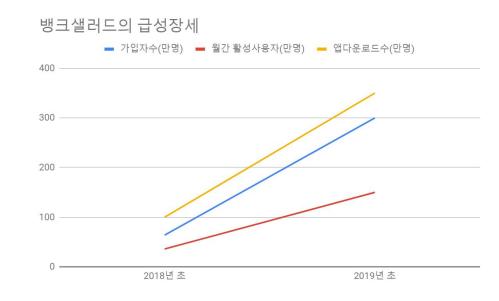
뱅크샐러드 고객 연동 관리금액

87,000,000,000 원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뱅크샐러드 : 핀테크 업체에서 종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HOME > 정책/금융

뱅크샐러드가 뭐길래...금융권 잇단 러브콜

음 정지서 기자 │ ② 승인 2019.02.19 08:45 │ ⊚ 댓글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을 한데 모아 소개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에 금융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최근 들어 금융 분야에서 토스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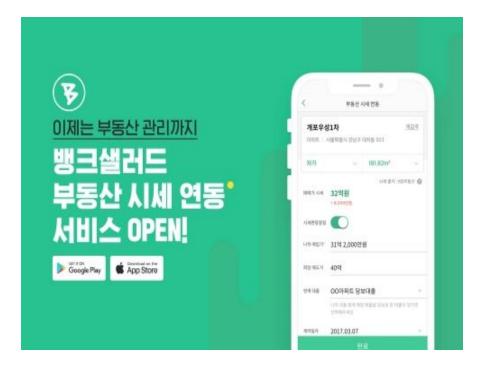
통합 자산관리, 자동 가계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뱅크샐러드 : 핀테크 업체에서 종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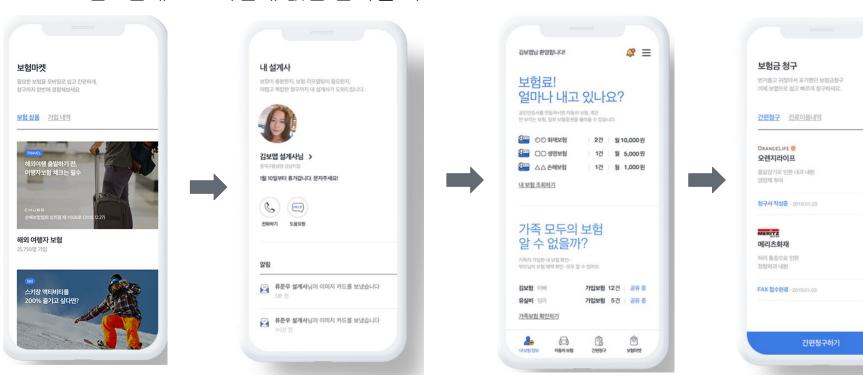
- 뱅크샐러드: 핀테크 업체에서 종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 혁신적인 서비스(종합자산관리)로 고객 유치
 - 높은 앱 사용빈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자동차, 부동산 시세조회 기능등)
 - 당해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사, 인접 영역으로 서비스 확대(보험상품 추천, 신용정보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로 확보한 고객의 대규모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금융"(Data Driven Finance) 서비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보맵 : 핀테크로 이전에 없던 편의를 확보



약진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

• 보맵: 핀테크로 이전에 없던 편의를 확보

'똘똘한 앱' 등장에 떨고 있는 보험사들

김정훈 기자 | 입력: 2018.11.22 06:03



왼쪽부터 디레몬, 굿리치, 보맵 로고

감사합니다